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〈일자리노동정책관, 일자리정책담당관〉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서울시일자리위원회	50명	43명	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9 조~제17조
2	서울시기술교육원통합운영위원회	19명	15명	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동부기술교육원	42	- 지방자치법 제104조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
2	중부기술교육원	34	
3	북부기술교육원	45	
4	남부기술교육원	42	

※ 위임·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·기관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